



(사) 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우 448-808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164(죽전동) 신주프라자 7층 homepage : <http://www.kepla.or.kr>
전화 (02)417-9681 / 팩스 (02)417-9689 / E-mail : kepla@chol.com 사무국 : 이승용 / 김혜선

발송번호 제 15 - 070호
시행일자 2015. 08. 24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담당자

제 목 :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업종 코드 복원 및 대행자 관리 업무의 건』

1. 귀 단체(회,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 입찰을 위한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업종 코드가 삭제('14. 3월)된 바, 그 동안 입찰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본 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코드 복원을 추진해 온 결과, 8월 17일에 대행자 코드(7416)가 복원이 되었습니다.
3. 환경부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업종 신설 또는 등록 규정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관련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 정관 변경 허가를 통해 본 협회에 관리 업무를 위탁하였고,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4. 이에 첨부된 내용을 참조하시고(이외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참조),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하는 관련 기관 및 대행자 등록을 원하시는 업체들께서 적극적 협조와 활용을 바랍니다.

붙 임 : 1. 대행자 자격관리 업무 및 대행자 등록 현황
2.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관련 규정. -끝-

(사) 한국 환경 계획·조 성 협 회

회 장 이 승
수석부회장 임 상



대행자 자격관리 업무 및 대행자 등록 현황

I. 대행자 자격관리 업무

□ 등록요건

-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 및 동법 제46조제3항 별표3(붙임 3 참조)

□ 등록절차

-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다음의 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하며, 검토과정에서 등록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함.
- 절차 : 등록신청->접수 및 서류검토->현지확인(필요시)->종합검토->등록

□ 등록 신청 및 기간

- 등록신청 - (사)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환경부승인 2015.8.6.) 제4조 6항에 따라 협회에 신청
- 신청기간 - 매년 1월말까지 대행자 자격요건서류 등록 및 등록증 재교부
현재 최초 발급 진행 중, 신규업체는 수시 신청
- 변경등록 -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

□ 접수 및 서류 검토

- 등록신청을 받은 협회의 장은 시행령(별표3의 대행자등록요건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협회 제1호 서식에 따라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배포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에 보고하고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

□ 대행자 관리비

- 별도 가입비없이 연 50만원

II. 대행자 등록현황

- 현황 : 2015년 8월 현재 27개 업체 등록
- 등록번호 : 제2015-001호~027호
- 등록업체 현황(등록번호순)
(주)장원조경, (주)평화엔지니어링,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주), 다인산업개발(주),
(주)한국도시녹화, (주)아트스프링, 삼불건설, (주)상림원, (주)송림에코원, (주)아썸, (주)에코탑플러스,
일송지오텍(주), (주)그린포엘, (주)태화종합조경, (주)서암, (주)장안, (주)강산, 에코앤바이오(주),
(주)동아기술공사, 에코그린랜드(주), 대양개발, (주)송림원, 반도이앤씨(주), 산하종합조경(주),
성림조경(주), (주)한별조경건설, 대아종합조경(주)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관련규정

□ 자연환경보전법

- 법 제5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지원) ④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얻은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 다만, 산림 또는 산지에서 시행하는 제4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된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하여는 반환금 또는 반환예정금액의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산림 또는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훼손지 복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승인,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의 동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과 범위**,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46조(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등)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소생태계** 조성사업
 2.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생태통로** 조성사업
 3.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대체자연** 조성사업
 4.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사업
 5. 그 밖에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
- ②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의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제46조제3항 관련)

기술능력	시 설	자 본 금
가. 자연환경관리 기술사 1명 이상 나. 자연생태복원기사 또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2명 이상. 다만, 그 중 1명은 생물분류기사로 대체할 수 있다. 다.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중급기술자 1명 이상 라. 토목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	개인 : 14억원 이상 법인 : 7억원 이상

비 고

1. 공통기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 사무실의 면적 및 자본금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기술능력

가. 위 표에 따른 기술사, 기사 및 기술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자는 제외한다.

나. 위 표에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술사, 기사 및 산업기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기사 및 산업기사 이상인 자를 말하며, 중급기술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 위 표에서 라목의 토목 분야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 분야 건설기술자를 말하며, 산림공학기술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를 말한다.

3. 시설

위 표에서 사무실은 「건축법」,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

4. 자본금

가. 개인의 자본금은 영업용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나. 법인 중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자본금은 출자금을 말한다.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상의 자기자본을 말한다.